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42 발의연월일: 2022. 10. 5.

발 의 자:신영대·이형석·김정호

김성환 · 김경만 · 이용빈

전재수 · 한준호 · 서삼석

홍기원 • 이개호 • 한병도

이장섭 · 권칠승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짓 등으로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이전·폐업 등의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 및 말소할 근거가 없어 전통시장 현장과 다른 정보가 누적되고 있음.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시장 1401개 중 시장의 총영업점포 수와 노점 수의 합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시장이 380곳으로확인됨.

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받아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등 가맹

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을 말소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6의 제목 중 "취소"를 "취소 및 말소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 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부가가치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가맹점이 이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해당 가맹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가맹점의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6(가맹점 등록의 <u>취소</u>	제26조의6(가맹점 등록의 <u>취소</u>
등) ① ~ ③ (생 략)	<u>및 말소</u> 등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부
	가가치세법」 등 관계 법령에
	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가맹점
	이 이전 또는 폐업을 한 경우
	해당 가맹점 등록을 말소하여
	<u>야 한다.</u>
<u> &lt;신 설&gt;</u>	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
	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	국세청장에게 가맹점의 이전
	및 폐업 등 사업자등록 사항의
	변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
	있다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
	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
	한다.